

2000. 9.19

제99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기 획 총 무 위 원 회

(보고자 : 전문위원 장재영)

광주광역시 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提案理由

- 가.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이 당초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 6. 30까지로 승인되었으나
- 나. 동 기능전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정원의 존속기한이 1과는 2000. 12. 31까지, 1과는 2001. 6. 30까지로 각각 연장 승인되었기 이를 반영코자 함.

2. 主要骨子

가. 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과는 2000. 12. 31까지로 하고, 나머지 1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함

나. 조례시행일(부칙 제1조)

- 한시기구의 승인효력이 2000. 7. 1부터 유효하므로 개정된 조례의 적용일을 2000년 7월 1일로 함

3. 檢討意見

'99년 8월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87회 임시회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중심을 둔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의 추진방향에 따라 조직의 규모를 기존 15개 실과 중 1과를 감축조정 하였으며,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능전환사업과 대민업무의 지원체제를 보강하기 위하여 2개 과(주민자치과, 사회진흥과)를 한시기구(존속기한 2000년 6월 30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개의 한시기구 중 1과는 그 존속기한을 2000. 12. 31까지, 또 다른 1과는 2001. 6. 30까지 연장하자는 것과 개정된 조례의 적용일을 2000년 7월 1일로 하자는 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를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되, 시·군·구에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시기구의 존치 문제는 한시적 행정수요의 발생, 일정기간 내에 사업수행을 종료하기 위한 필요성 여부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제2단계 지방조직구조조정 때 2과의 한시기구 설치 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능전환사업과 대민업무의 지원체제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재는 이러한 기능수행을 위한 기반조성이 제대로

정착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동안에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주민참여의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산정할 것인가는 여러 이론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처럼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설치된 한시기구(2과) 중 1과의 존속기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나머지 1과의 존속기한은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구 표현상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행 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주민자치과와 사회진흥과의 존속기한은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개정안에서는 한시기구가 어느 것인지도 규정하지 않은 채, 1과의 존속기한은 2000년 12월 31일, 나머지 1과의 존속기한은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2단계 지방조직구조조정 때 설치한 한시기구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능전환사업과 대민업무의 지원체제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지, 주민자치과나 사회진흥과로 한시기구를 특정 설치하여 이러한 업무를 관장토록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금년 말에 있게 될 행정기구 개편에서도 이들 두 기관의 존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기능을 어느 부서에게 담당케 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부칙 제2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16실·과로 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는 15실·과로 하며, 2001년 7월 1일 이후에는 14실·과로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